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2019. 2.

서울특별시

- 이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 라 한다)」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및 의무 참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민간 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여야 함
- 관련 부처·기관·지자체 등은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내용	제·개정 사유
'17. 7.	시행매뉴얼 제정	신규
'18. 2.	○ 대시민 홍보, 주차장 예외기준, 저감조치 확대 등	개정 수요 반영
'18. 3.	○ 비상저감조치 개선계획(2.27) 반영 (대중교통 무료 운영 정책 전환 등), 현행화	개정 수요 반영
'18. 3.	○ 예보 등급 변경 반영, 휴일 긴급조치 추가, 현행화 등	개정 수요 반영
'18. 5.	○ 기관 홈페이지 등에 주차장 통제 현황 사전 안내 추가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단속 추가 ○ 비상발전기 탄력적 운영 시행 추가 ○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대책 구체화	개정 수요 반영
'18.1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개정과 수도권 공동시행, 예비저감조치 도입, 휴일 발령 등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사항 반영 등	개정 수요 반영
'19. 1.	○ 서울시 조직개편('19.1.1) 반영 ○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및 직원차량 2부제 추가	개정 수요 반영
'19. 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및 「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반영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정 수요 반영

개정요지 ('19.2)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휴원·휴업 권고,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개정소요 반영

항 목	현 행('19.1월)	개 정('19.2월)
차량운행 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 (수도권의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은 '19.5월말까지 유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휴업 등 권고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건설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 : 공공 공사장 - 조정 : 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기존 동일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우, 강풍, 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전에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5$\mu\text{g}/\text{m}^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mu\text{g}/\text{m}^3$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급변 등으로 더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 물청소 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기상 등을 고려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일, 주 야간 실시 ◆ 영상 3도 이상 시 물청소 실시

목 차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1
제2절 근 거	1
제3절 용어정의	1
제4절 비상저감조치의 유형	3
가. 예비저감조치	3
나. 비상저감조치	4
제5절 비상저감조치 해제조건	6

제2장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8
제2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10
가. 운영개요	10
나. 조직체계	10
다. 추진반별 역할	11
라. 기후환경본부 역할	14
제3절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15

제3장 단계별 조치사항

【예비저감조치】

제1절 예비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1단계)	17
가. 발령조건	17
나. 발령조건 검토 및 발령	17
제2절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	18
가. 전파시기	18
나. 전파방법	18
다. 전파내용	18
제3절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19
<저감조치 시행>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19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19
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	19
<단속반 운영>	
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19
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19

【비상저감조치】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4단계)	20
가. 발령조건	20
나. 발령조건 검토 및 발령	20
제5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	21
가. 전파시기	21
나. 전파방법	21
다. 전파내용	21

제6절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22
<저감조치 시행>	
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22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22
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	22
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행 운전제한	22
<점검 및 단속>	
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	23
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23
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23
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	23
<취약계층 등 노출저감>	
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등 권고	23
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24
<대시민 홍보 및 참여>	
타.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	24
파.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24
제7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	25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	25
나. 재발령	25
제8절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평가(8단계)	26
가. 이행결과 보고	26
나. 평가	26

제4장 분야별 세부 이행사항

제1절 분야별 이행사항 개요	28
가. 이행시간	28
나. 분야별 이행사항	28
제2절 분야별 세부 이행사항	29
<저감조치 시행>	
1-1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29
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29
1-2 사업장,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31
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31
나. 공사시간 단축·조정	32
1-3 도로 미산면지 저감	33
가. 추진 개요	33
나. 강화 추진내용	33
1-4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행 운전제한	34
가. 대 상	34
나. 상황전파	34
다. 조치사항	34
라. 이행결과 제출	34
<점검 및 단속>	
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35
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5
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35
2-2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36
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36
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36

2-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	37
가.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37
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37

<취약계층 등 노출저감>

3-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 휴원 등 권고	38
가. 개 요	38
나. 권고 대상	38
다. 조치 내용	38
3-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39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39
나. 어린이·영유아·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39
다. 야외작업자 보호	39
라. 야외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	40

<대시민 홍보 및 참여>

4-1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	41
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전파	41
나. 대기환경정보(비상저감조치, 경보발령 등) 공개	41
다. 환경 시민단체 연계 미세먼지저감 캠페인 실시	42
라. 비상저감조치 대시민 홍보(교통방송)	42
4-2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43
가. 추진 개요	43
나. 증빙자료 확인 및 마일리지 지급 확정	43

부록 및 서식	45
----------------------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고농도 초미세먼지(PM_{2.5})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 수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근 거

가. 관련 법령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9.2.15 시행)
- 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2.15 시행)

나. 관련 지침 등

- 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환경부, '19.2)
- 2)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18.3.14)
- 3)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17.6.22)

제3절 용어 정의

가. 미세먼지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여,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₁₀, 10 μ m 이하)과 초미세먼지(PM_{2.5}, 2.5 μ m 이하)로 구분

나.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공공 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다. 예비저감조치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일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정책

라. 광역비상저감조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저감조치의 효율성 및 효과성 높이는 정책

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에 따른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천연가스·클린디젤자동차로서 산업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제4절 비상저감조치의 유형 (법 제18조 제1항)

(수도권은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가. 예비저감조치 (※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 개요

오늘(D-2일) 미세먼지 예보(17시 기준) 결과, 모레(D)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D-1)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비상저감조치의 효과 제고

○ 발령조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 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mu\text{g}/\text{m}^3$ 초과 예측

○ 조치시행 : D-1일 06~21시, 공공부문 필수 참여(민간부문 자율 참여)

-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및 직원차량 : 2부제 시행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도로청소 강화, 대시민 홍보 등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 비상저감

구 분	예비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 정	D-2일	D-1일	D일
발령조건 (PM _{2.5} 예보)		$50\mu\text{g}/\text{m}^3$ 초과	$50\mu\text{g}/\text{m}^3$ 초과 매우나쁨($75\mu\text{g}/\text{m}^3$)

나. 비상저감조치

○ 개 요

미세먼지의 실측 및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의 발령조건을 수도권 2개 시·도 이상이 충족 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조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 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1일) 0~16시 PM_{2.5} 평균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② 오늘(D-1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이상 PM_{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③ 내일(D일) PM_{2.5}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재난문자(CBS)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3개 시·도에 모두 발송

○ **조치시행** : D일 06~21시, 공공 및 민간부문 참여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강화, 대시민 홍보 강화 등

※ [토·공휴일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미시행](#)

※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행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발령조건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이 2개 이상 시·도 총족할 경우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mu\text{g}/\text{m}^3$ 초과(예보)		① 당일(D-1일) $\text{PM}_{2.5}$ $50 \mu\text{g}/\text{m}^3$ 초과 (0시~16시 평균), 내일(D일) $\text{PM}_{2.5}$ $50 \mu\text{g}/\text{m}^3$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 (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text{PM}_{2.5}$ $50 \mu\text{g}/\text{m}^3$ 초과(예보) ③ 내일(D일) $\text{PM}_{2.5}$ $75 \mu\text{g}/\text{m}^3$ 초과(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재난문자방송 (CBS) 발송	미 발송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 발송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 (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X	X	O	X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X	X	O	X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기타 비상저감조치	O	O	O	O

제5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가. 자동해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1시

나. 조기해제 : 시행일 21시 이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해제 가능

- (해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mu\text{g}/\text{m}^3$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제 절차) 비상저감협의회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필요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제2장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예비저감조치	<p>〔1단계〕 예비저감준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예비저감 상황실” 운영(16시00분~) -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p>※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시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p>
	<p>〔2단계〕 예비저감발령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대기환경청) 예비저감조치 발령 요청 및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대기정보 앱 게재 등 - (서울·인천·경기) 유관 기관(부서), 자치구, 사업장·공사장 등 시행·일선기관에 문자 전송, 공문시행 - (해당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 직원에 전파
	<p>〔3단계〕 예비저감시행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선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도로청소 강화,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해당 시행·일선기관)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및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p>※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좋음($15\mu\text{g}/\text{m}^3$ 이하) 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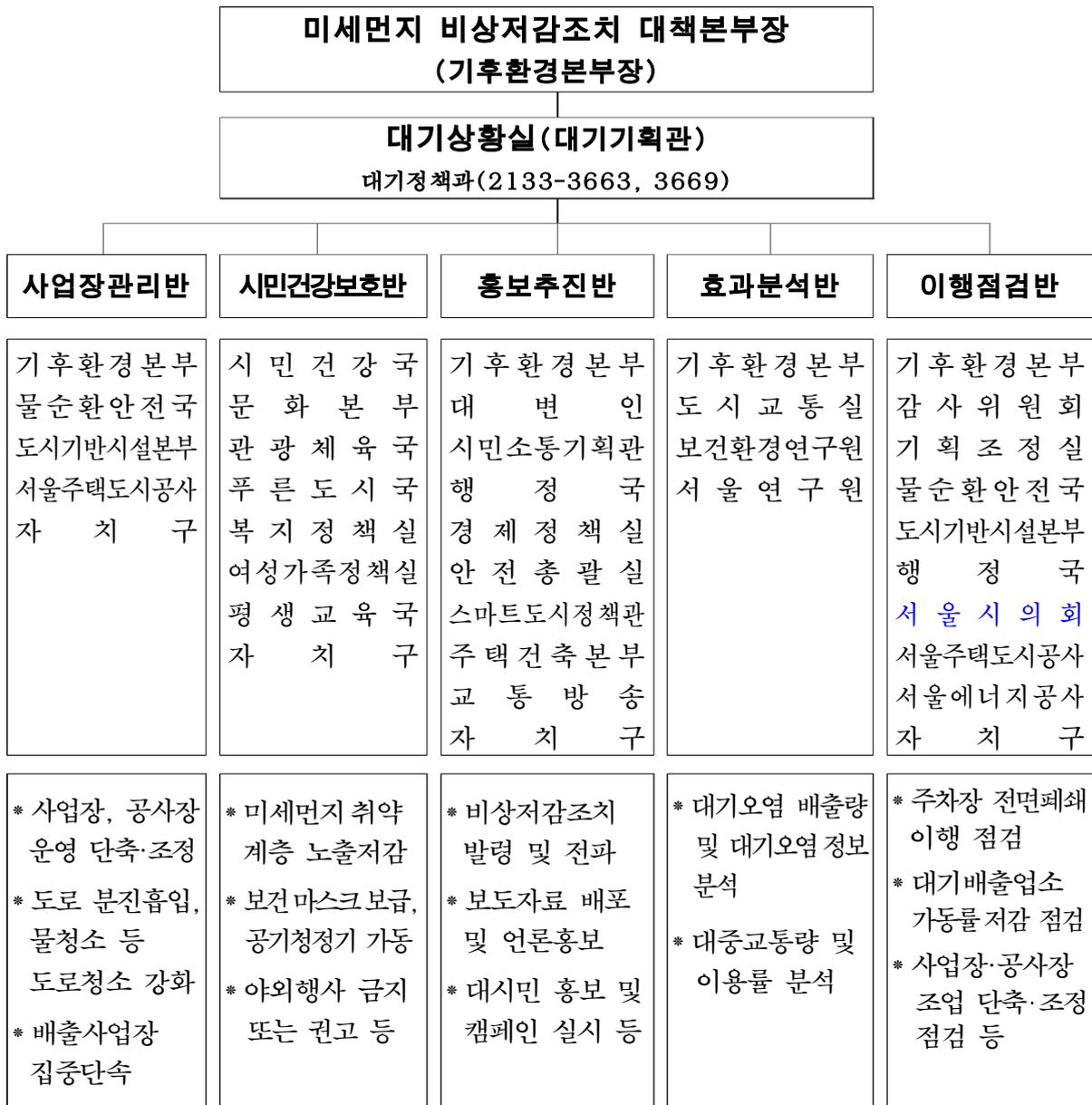
<p>〔4단계〕 비상저감준비기</p> <p>발령조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상황실” 운영(15시00분~) -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p>※ 각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시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p>
<p>〔5단계〕 비상저감발령기</p> <p>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대기환경청) 예비저감조치 발령 요청 및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언론·홈페이지 및 우리동네대기정보 앱개재 등 - (서울·인천·경기) 언론보도 자료제공,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p>〔6단계〕 비상저감시행기</p> <p>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선기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등,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폐쇄 안내문 부착 등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저감협의회) 특별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한국환경공단</p>
<p>〔7단계〕 비상저감관찰기</p> <p>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조기해제 등 검토 <p>①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21시까지 시행</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8단계(보고·평가)로 진행</p> <p>② (재발령) 익일 17: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4단계(시행여부 결정)→ 5단계(발표 및 전파)→ 6단계(조치 시행)→ 7단계(관찰기)로 진행</p> <p>③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좋음($15\mu\text{g}/\text{m}^3$ 이하)”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4단계(시행여부 결정)→ 5단계(발표 및 전파)→ 8단계(보고·평가)로 진행</p>
<p>〔8단계〕 비상저감종결·평가기</p> <p>점검결과 보고·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선기관) 발령 후 15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예비저감조치결과도 함께 제출) - (서울·인천·경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제출 - (수도권대기환경청) 평가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제출

제2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가.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예상되는 당일 16시부터
- 구성체계 : 5개 반, 55개 기관(서울시 26, 자치구 25, 공사·출연기관 4)
- 주요역할 : 단기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실행

나. 조직체계



※ 대책본부는 5개반 협업체계로 구성. 단, 추진반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음.

다. 추진반별 역할

추진반	기관명	부서명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사업장 관리반	기후환경 본부	자 원 순 환 과	○ 강남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전파 및 점검	3679	
			○ 마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전파 및 점검	3686	
			○ 노원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전파 및 점검	3681	
			○ 양천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전파 및 점검	3682	
		녹색에너지과	○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제한 점검	3560	
		물 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가동률 하향조정 전파 및 지도점검	3836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 무 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 조업시간 단축	3708-2319
	에너지 공사	환경안전부	○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마곡) 가동률 하향조정	2640-5220 5222	
	서울주택 도시공사	도시환경부	○ SH 발주 공사장 외부작업 금지 지도 및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분석 등	3410-7756	
	자치구	-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관리 ○ 산하 기관 및 사업장·공사장 단축·조정 및 이행점검	-	
시민건강 보호반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여성노숙인 시설에 상황전파 및 보호조치 시행	5328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휴원 권고	5116	
	시민 건강국	질병관리과	○ 의료취약계층 호흡기질환 등 건강관리 시행	7680	
	복지 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소관시설에 상황전파 등 장애인 보호조치 시행	7447	
		어르신복지과	○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 어르신 보호조치 시행	7407	
	도시 교통실	교통지도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추진(주차단속원)	456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514	
	관체 육국	체육정책과	○ 체육시설 야외행사 조정	2678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중단	2688 2690	
	기후환경 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생활환경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단속 ○ 매연, 공회전 단속	3658 4430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환경미화원)			3734		
○ 도로 분진청소(물청소, 분진흡입) 확대 - 4차로 미만 도로 포함 전면 물청소 실시			3737		

추진반	기관명	부서명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시민건강 보호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도로보수 작업자)	815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아파트 주민 대상 전파 및 결과수합	713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공원관리 작업자)	203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공사장 작업자)	3708-2317
	평교육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유치원, 학교 휴업 등 권고	3919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대시민 홍보 등 이행	6311-9515
홍보 추진반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환경 시민단체 연계 캠페인 전개, 시민 홍보	3529
		에너지시민협력과	○ 미세먼지 저감 홍보, 캠페인 추진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운영	3583 3611
	대변인	언론담당관	○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전파	6210 62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市 홍보매체 활용 홍보 총괄 ○ 시민게시판, 미디어 보드 표출	6424 6426
		뉴미디어담당관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6484
	행정국	자치행정과	○ 자치구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안내	580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상공회의소, 기업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참여 독려	525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 대중교통 이용홍보 및 대중교통 증차 검토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시홈페이지, 모바일서울을 통한 전파	2968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재난문자(CBS) 발송	8535 0090~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아파트 주민 대상 전파 및 결과수합	7133
	교통방송	보도국 라디오국 텔레비전국	○ 비상저감조치 대시민 홍보	311-5354 311-5665 311-5412
	자치구	-	○ 직원 및 소속기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참여 홍보(홈페이지, SNS 등) ○ 주차장 폐쇄 확인 및 안내문 비치 등 사전준비 ○ 아파트 주민, 기업체 등 홍보 캠페인	-

추진반	기관명	부서명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효 과 분석반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 이용객수 분석 및 교통량 총괄 분석	2218	
		교통정보과	○ 지점교통량 분석, 도심통행량 등 분석자료 제공	4965	
	서 울 연 구 원	서울연구원	○ 미세먼지 원인 및 저감 효과분석	2149-1096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보건환경연구원	○ 미세먼지 원인 및 저감 효과분석	570-3371 570-3412	
이 행 점검반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 자치구 주차장 현장점검	3515	
		차 량 공 해 저 감 과	○ 매연, 공회전 단속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4430 3658	
	감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주차장 전면폐쇄 및 2부제 이행 점검	3020	
	기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시행 점검회의 운영	6614	
	도 시 교 통 실	교통지도과	○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대책 시행	4563	
	행 정 국	총 무 과		○ 본관 주차장 폐쇄	5632
				○ 서소문 별관 주차장 폐쇄	1609
				○ 市 직원대상 상황전파	5657
		자치행정과	○ 부구청장 점검회의 운영	5805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 자치구 주차장 폐쇄 점검 및 각종 회의지원	3515	
	서 울 시 의 회	의정담당관	○ 시의회 주차장 폐쇄	2180-7775	
	서울에너지 공사	총 무 부	○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집단에너지공급 시설(마곡) 주차장 폐쇄	2640-5166	
	자 치 구	-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운행제한 이행 ○ 자동차 매연, 공회전, 불법주정차, 불법소각 단속 등	-	

라. 기후환경본부 역할

부서별	분야(팀)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	○ 회의준비, 언론대응, 대외협력 지원, 이행실적 정리	3634
	대기정보팀	○ 대기질 모니터링, 환경부 및 경기·인천 비상상황 공유 ○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발령·해제, 발령 보도문 작성 ○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관리, 저감조치 실적취합	3663 3669 3639
	대기환경 전략팀	○ 주차장(市·산하기관·자치구) 이행확인 및 결과취합	4436
	배출관리팀	○ 공사장(도기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점검결과 취합	3656
	실내대기 관리팀	○ 대기배출 사업장(물재생시설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서울에너지공사, 자치구) 점검결과 취합	3628
환경정책과	대시민 홍보	○ 환경 시민단체 연계 캠페인 전개, 시민 홍보	3529
	이행 점검	○ 자치구 주차장 현장점검 총괄(부서별 점검대상 조정) ○ 비상저감조치 관련 각종 회의개최 지원	3515
기후대기과	이행 점검	○ 자치구 주차장 현장 점검	3593
차량공해 저감과	이행 점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단속 ○ 매연, 공회전 단속	3658 4430
녹색에너지과	사업장 관리	○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제한 점검	3560
	이행 점검	○ 자치구 주차장 현장 점검	3553
자원순환과	사업장 관리	○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전파 및 점검	3685
	이행 점검	○ 자치구 주차장 현장 점검	3673
생활환경과	이행 점검	○ 자치구 주차장 현장 점검 ○ 도로 분진청소(물청소, 분진흡입) 확대 - 4차로 미만 도로 포함 전면 물청소 실시	3734
	시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환경미화원)	3734
에너지시민 협력과	대시민 홍보	○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추진	3583
	이행 점검	○ 자치구 주차장 현장 점검	3583

제3절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 운영목적 : 市·자치구·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언론대응 등 논의
- 운영개요 : 사전점검 및 시행일 점검회의 개최

발 령 일	17시	① 실·국 사전 점검회의 (기획담당관 및 협조부서, 6층 상황실) - 당일 인터넷 언론보도 동향 공유 및 조치 - 실·본부·국, 자치구, 민간 협조사항 전달 및 이행 독려
	18시	② 부구청장 사전 점검회의 (자치행정과, 6층 영상회의실) - 자치구 협조사항 전달 및 이행 독려
시 행 일	10시	③ 언론 브리핑(필요시) (대변인 및 협조부서, 2층 브리핑룸) -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해명, 반론 등/쟁점사항을 Q&A로 작성·배포
시 행 다 음 일	09시	④ 실·국 점검회의(필요시) (기획담당관 및 협조부서, 6층 영상회의실) - 언론보도 체크 및 대응전략 수립, 전일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 단, 2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해제 종료된 다음날 점검회의 개최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며, 회의시간 및 회의개최 여부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제3장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예비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1단계)(영 제12조 제1항) (D-2일, 17:00~17:15)

가. 발령조건(당일 17시 예보 기준)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 ① 내일 및 모레 모두 $50\mu\text{g}/\text{m}^3$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②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나. 발령조건 검토 및 발령

-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예비저감 상황실” 운영(16시00분~)
-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미발령 결정시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

제2절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법 제18조 제1항)

(D-2일, 17:15~)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예비저감조치의 발령을 전파

나. 전파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 등
- **(서울·인천·경기)** 유관기관(부서), 자치구, 사업장·공사장 등 시행·일선기관에 문자 전송, 공문시행
-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게 전파

다. 전파내용

-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절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D-1일, 06~21시)

저감조치 시행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영 제10조 제4호)

- (시행일시) 평일 예비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차량(관용차, 10인승 이하), 직원차량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 제1항)

- (적용대상)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시행방법) 사업장 가동율·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영 제10조 제4호, 조례 제5조 제6호)

- (시행기관) 市 생활환경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시행방법) 영상 3도 이상 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운영 확대
(1일 1회 → 2회) 및 도로청소 확대 시행

단속반 운영

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94조)

- (특별단속반 운영)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자치구
- (단속방법) 비디오·열화상 카메라 활용, 노상단속 등

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56조)

- (특별단속반 운영) 市, 자치구
- (단속지역)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4단계)(법 제18조 제1항)

(D-1일, 17:00~17:15)

가. 발령조건(당일 17시 예보 기준)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 ①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②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③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mu\text{g}/\text{m}^3$ 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나. 발령조건 검토 및 발령

-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상황실” 운영(15시00분~)
-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미발령 결정시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

제5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영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

(D-1일, 17:15~)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전파

나. 전파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 쏘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 CBS 문자송신
- **(서울·인천·경기)** 언론보도 자료제공,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게 전파

다. 전파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차량 운행제한 대상 등), 대중교통이용 권장 등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의무화 등 홍보

◆ 캠페인, 방송을 통한 대시민 홍보

- 환경 관련 시민단체 연계 미세먼지저감 캠페인 전개
 - 시행일 출근길(07:30~08:30) 긴급 캠페인 실시
- 교통방송의 비상저감조치 대시민 홍보
 - 발령일 17:00 ~ 시행일 09:00,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집중홍보

제6절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D일, 06~21시)

저감조치 시행

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영 제10조 제4호,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 (시행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행내용) 행정·공공기관 관용차 및 직원 차량 운행 금지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 제1항)

- (적용대상) 행정·공공기관·민간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시행방법) 사업장 가동율·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영 제10조 제4호, 조례 제5조 제6호)

- (시행기관) 市 생활환경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시행방법) 영상 3도 이상 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운영 확대
(1일 1회 → 2회) 및 도로청소 확대 시행

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행 운전제한

- (적용대상) 공공 및 민간부문 비상발전기
- (시행방법)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

점검 및 단속

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10조)

- (단속기관)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및 담당공무원에 의한 위반차량 단속

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94조)

- (특별단속반 운영)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자치구
- (단속방법) 비디오·열화상 카메라 활용, 노상단속 등

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56조)

- (특별단속반 운영) 市, 자치구
- (단속지역)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

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 제1항)

- (점검기관) 市, 자치구
- (점검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점검

취약계층 등 노출저감

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등 권고(영 제11조)

- (권고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 (권고방법) 시장이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
- (조치내용)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희망학생을 위한 담당 교사 지정,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 시행

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법 제23조)

- 어린이·영유아·노인·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실내 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 야외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추가 휴식시간 배정 등 조치
- 야외행사, 실외 체육시설은 취소 또는 실내행사 대체, '서울광장 야외 스के이트장' 운영 중단
- 지하역사·터널 등 물청소 확대, 환기시설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내 방풍문 상태 점검, 최신 전동차 우선 배치 등 실시

대시민 홍보 및 참여

타.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법 제18조 제4항, 영 제12조)

-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대중교통 이용, 2부제 참여 아파트 안내방송
- (응답소 '위개대응 메시지' 발송)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일괄 전파
- (홈페이지, SNS 활용) 내손안의 서울, 카카오톡, 서울플러스 친구 등
- (전광판 문자 표출)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지하철, 시민게시판 등 활용
- (기타) TV, 라디오, 출입기자 홍보 등(교통방송, 대변인)

파.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시행기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치구
- (시행방법)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참여한 승용차 회원에게 1회 참여시 3,000 마일리지 지급

제7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법 제19조)

(D일, 17:00)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법 제19조)

- (자동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1시에 자동해제
- (조기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21시 이전 조기해제 가능
 - (해제 조건)
 - ①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mu\text{g}/\text{m}^3$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②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제 절차) 비상저감협의회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필요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나. 재발령

- 익일 17시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초기발령과 동일한 절차를 걸쳐 재발령
 - 4단계(시행여부 결정) → 5단계(발표 및 전파) → 6단계(조치 시행) → 7단계(관찰기)로 진행
- ※ 대기배출사업장은 재발령일 21시부터 다음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향 조정

제8절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 보고·평가(8단계)(법 제20조)

(D일, 17:00)

가. 이행결과 보고

- 제출대상 : 市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 자치구 및 산하기관
- 제출방법
 - 지도점검표 : 시행일 오전까지 제출(서식 6,7,8)
 - 시행결과보고서 : 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서식 1)
 - 서식 1은 유관기관(부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제출
 - 도로청소, 캠페인 등 분야별 지도·점검 등 추진실적은 자체 보고서식 활용
- 제출내용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도로 비산먼지 저감 등 시행 실적
 -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지도·점검 실적
 -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 실적
 - 비상저감조치 전파,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 실적

나. 평가

- 市(대기정책과)는 점검결과를 총괄 취합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상저감조치 평가보고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보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3개 시·도의 평가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제출

- *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 및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부**에 제공

제4장 분야별 이행사항

제1절 분야별 이행사항 개요

가. 이행시간 : 시행일 06 ~ 21시

나. 분야별 이행사항

분 야	이행 사항	유관 기관
1. 저감조치 시행	1-1.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전 기관, 자치구
	1-2. 사업장,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 도로 비산먼지 저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4.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행 운전제한	기후환경본부
2. 점검 및 단속	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2.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 취약계층 등 노출저감	3-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 등 권고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정책실
	3-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여성가족정책실,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3-3. 야외행사 금지 또는 권고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4. 대시민 홍보 및 참여	4-1.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	기후환경본부, 대변인, 시민소통 기획관, 행정국, 도시교통실, 스마트도시정책관,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교통방송, 자치구
	4-2. 승용차 마일리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제2절 분야별 세부 이행사항

저감조치 시행

1-1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영 제10조 제4호, 조례 제5조 제1항)

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대 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대상 주차장 현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평일 시행)
 -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중 거주자 우선주차 등의 사유로 기후환경본부와 사전협의(공문) 조정된 경우에는 기관장이 일정시간 주차장 개방 결정 가능
- 적용제외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 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 하에 정한 자동차 등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추가조치 :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대중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검토

○ 주차장 폐쇄 제외 및 2부제 대체 시행 기관

대 상	사유	비고
마포구청, 성동구청 등	복합청사	2부제 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등	임대청사	폐쇄 제외
시립미술관, 시립과학관 등	민간운영 청사	폐쇄 제외
문화, 체육, 의료 복지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	2부제 시행
서울시립병원 등	병원	폐쇄 제외

※ 폐쇄 제외 및 2부제 시행기관도 관용차 운행제한 및 직원차량 운행금지 적용

1-2 사업장,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 제1항)

- 시행시기 : 예비·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부터 21시까지
- 대 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 부록1 참조
- 추진기관(부서)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기관(부서), 자치구
- 조치사항

[공공부문 사업장]

- 열병합발전소(최대 20% 하향 조정, 발전시설 및 보일러)
- 자원회수시설(최대 40% 하향 조정, 소각시설)
- 물재생센터(최대 40% 하향 조정, 슬러지처리시설 및 보일러시설)

[민간부문 사업장]

- 가동률 하향 조정
- 운영시간 단축(중단 불가능시 사유 및 참여방안 마련)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 자치구별 민간부문 사업장 관리카드 서식 1, 4 (사전) 작성 제출
→ (부록 3)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참조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전파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부터 21시까지
- 대 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VOCs 배출 사업장
- 추진기관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자치구
- 조치사항 : 가동률 하향 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조치 자율 시행 전파

나. 공사시간 단축·조정(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 개요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
- 시행시기 : 예비·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부터 21시까지
- 대상 : 공공부문 및 민간 건설공사장(예비저감조치는 민간 자율참여)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공사장은 법적의무 대상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규모 미만이더라도 관급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약 등 추진
- 추진기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① 공사시간 단축·조정 대상 공사장
 - 관급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4시간 단축)
 - 민간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09시 회피)
 -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 ② 모든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이행점검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 및 비산먼지 억제 강화 여부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관리 및 사전 안내 철저

- ▶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전파
- ▶ 공사장별 추진 공정 현행화(매월) : 철거/굴토/골조/마감/기타
- ▶ 공사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입구에 '안내간판(현수막)' 설치
 - 예시 : 우리 공사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시간을 단축합니다

1-3 도로 비산먼지 저감(영 제10조 제4호, 조례 제5조 제6호)

가. 추진 개요

- 추진기관 : 市 생활환경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 해제 시까지
- 차량대수 : 총 283대(자치구 246, 민간대행 18, 시설공단 19)
- 시행지역
 - 자치구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및 보도 등
 - 서울시설공단 : 자동차 전용도로
- 시행방법 : 서울시 도로분진청소 작업 매뉴얼에 따라 물청소 및 분진흡입 실시

나. 도로 청소 운영기준

- 작업주기 : 1회/일 야간시간(23~07시) → 2회/일, 주간시간(10~17시) 추가
 -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 시행

※ 겨울철 물청소 온도 기준 : 영상 3도 이상

1-4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행 운전제한

가. 대 상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상발전기

- 공공부문 :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 관계자 및 서울시 산하기관 등
- 민간부문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시설물 관리업체 등

나. 상황전파 : 사전 안내문자 발송

- 발송 대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기관의 비상발전기 담당자
- 발송 시기 : D-1일 17시15분 전파
- 발송 기관 : 대기정책과

다.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21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
- ※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안내문자(안)

사전 안내문자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00일)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행결과 제출(市 녹색에너지과)

- 제출기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 제출내용 : 무부하 시험운전 제한 참여 실태 점검 등 추진 실적

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조례 제5조·제6조·제7조)

-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토·공휴일 제외)
- ※ 단, 초미세먼지(PM_{2.5}) 농도가 보통 수준(예보 35 μ g/m³ 이하)으로 호전되는 경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제한 적용이 조기 중단 결정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유예차량
 - 대 상 : 수도권 외 등록, 총중량 2.5톤 미만
 - 유예기간 : '19. 5. 31까지
- ※ 서울시 공용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 전면 중단

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법 제31조 제2항, 조례 제9조·제10조)

- 단속지역 : 서울시 전지역
- 단속기관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단속방법 : 무인단속시스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단속 담당공무원에 의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지점 : 51개 지점
 - ※ 단속지점 확대(안) : '20년 66개 지점 → '21년 100개 지점
- 과 태 료 : 10만원

2-2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94조)

- 특별단속반 운영 : 기후환경본부(차량공해저감과), 자치구
- 단속방법 : 비디오카메라·열화상카메라 활용, 노상단속 등
- 집중 단속지역(대상)
 - 도심 간선도로, 유동인구 많은 지역, 학교 주변 등
 - 차고지, 터미널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집중관리
 - 학원차, 마을버스 등 오염부하가 큰 대형자동차 단속

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56조)

- 종합 교통상황실 구성·운영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부터 ~ 해제시까지
 -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상황전파
 - 불법 주·정차 단속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
- 특별단속반 : 시·자치구 단속반 운영
- 단속지역 및 차량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주변도로 순회점검
 - 주택가 골목길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단속 적발시 무관용원칙에 의거 조치

2-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

가.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점검(법 제18조 제1항)

- 점검반 편성 : 시·자치구
 - 자치구별 각 2인 1개조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편성
 - 점검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9시~18시
 - 대 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 부록1 참조
 - 점검내용 :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표(서식 7)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조정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점검
- ※ VOCs 배출시설 지도점검 병행시행

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법 제18조 제1항)

- 점검반 편성 : 시·자치구
 - 자치구별 각 2인 1개조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편성
- 점검일시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시간중
- 점검대상 :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등
- 점검내용 :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지도점검표(서식 8)에 따라 공사시간 변경·조정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점검
 - 비상저감조치 참여 관리카드 작성 여부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정상가동 등 먼지발생 예방조치 여부

3-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 휴원 등 권고(영 제11조)

가. 개요

시장은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 발령시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 권고

나. 권고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다. 조치내용

-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 시행

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휴업, 휴원 권고기준

- ① 내일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 ②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중 경보가 발령된 경우

마. 휴업, 휴원(수업시간 단축) 권고 절차

- ① 국립환경과학원 예보(내일 매우나쁨) 또는 서울시 경보 발령
- ② 서울시(대기정책과) 휴업, 휴원 권고 조건 충족 검토·알림

→ 서울시(교육정책과) 휴업 등 권고 → 교육청* → 유치원·학교
→ 서울시(보육담당관) 휴원 등 권고 → 어린이집

* 교육청(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 권고 이전 시와 교육청 업무담당자는 유선연락·사전협의 실시

3-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법 제23조 제1항, 영 제11조)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영유아·노인·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나. 어린이·영유아·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활동 자제,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 권고
- (노인·장애인) 실외활동 자제 및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시행
-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및 질환자 특별관리 강화

다. 야외작업자 보호

- (정보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즉시 작업자에게 상황 전파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보건용 마스크 해당기관에서 보급
 -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두통 등과 같은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벗어야 하며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사용은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 (휴식) 평소보다 휴식시간 추가 배정 조치
- (민감군 등에 대한 작업제한) 민감군 작업 제한 및 일반 작업자에 대한 야외 작업 제한
- (안전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 ※ 야외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위한 작업 조정은 현장 여건, 작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에서 결정

라. 야외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

※ 통합대기질지수(CAI, Comprehensive Air Quality Index)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야외 행사

○ (시, 자치구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행사전 행사일시 조정, 취소 또는 실내행사 대체
- 행사 진행시 취약계층 귀가 권고, 보건용 마스크 등 보급

○ (시, 자치구 후원) 취소 권고하되 주관부서 판단 결정

- 행사 진행시 취약계층 보호조치 권고

※ 주관부서에서는 행사계획 수립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책' 등 사전 검토 철저

② 실외 체육시설

○ 실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 금지

- 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또는 실내행사 대체
- 시설 전면(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이용객 안내체계 구축

○ ‘서울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영 중단

※ 단,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 이하로 호전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판단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및 (실외 작업자 보호) 대응요령 참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정보마당/자료실
-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고객의 소리/자료실
-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4-1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법 제18조 제4항, 영 제12조)

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전파

-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 대중교통 이용, 2부제 참여 아파트 안내방송
 - 자치구 : 대중교통이용 및 2부제 참여 캠페인(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 시민(단체) : 상징 거점지역(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마을단위(에너지자립마을 등)
-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 발송 :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일괄 전파
 - 응답소 시스템 등록 SNS계정 팔로워(약 39여만명)에 전파, 리트윗 등
- 홈페이지, SNS : 내손안의 서울, 카카오톡, 서울플러스 친구 등
 - 비상저감조치 상황,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대중교통 이용, 실외활동 자제 등
- 전광판 문자 표출 :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지하철, 시민게시판 등 활용
 - 도로변 전광판(대기, 버스, 교통 등) / 市 전광판 (시민소통기획관)
- 기타 : 방송(TV, 라디오) 및 출입기자 홍보 등 (교통방송, 대변인)

나. 대기환경정보(비상저감조치, 경보발령 등) 공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ir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Key features include:

- Map:** A map of Seoul divided into districts, with color-coded indicators for air quality levels (Good, Moderate, Bad, Very Bad, and Alert).
- Real-time Data:** A table showing current air quality for October 11, 2018, at 15:00. Values include: 초미세먼지 (10 µg/m³), 미세먼지 (24 µg/m³), 오존 (점검중), 이산화질소 (점검중), 일산화탄소 (점검중), and 아황산가스 (점검중).
- Alerts:** A section for '대기오염예보' (Air Pollution Forecast) with color-coded icons for different levels of concern.
- Public Notice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a '더보기' (More) button.
- Services:** Links to various services like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Emergency measures during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Air quality information text service), and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무료)' (Free air quality information text service).
- Weather:** A '서울의 날씨 및 기상지수' (Seoul's weather and weather index) section with a '구름많음' (Partly cloudy) forecast and a '더보기' (More) button.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http://cleanair.seoul.go.kr>)

다. 환경 시민단체 연계 미세먼지저감 캠페인 실시

- 시행일 출근길(07:30~08:30) 긴급 캠페인
- 시민 실천단 등 시·자치구의 환경단체 연계 정기 캠페인
- 광화문사거리, 시청광장 등 상징거리 민·관 합동 캠페인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캠페인 실시 등

[캠페인 사례]

자치구 시민안내 캠페인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민실천 소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
		
마을단위 거리 캠페인	출근길 긴급 캠페인	광화문광장 홍보캠페인
		

라. 비상저감조치 대시민 홍보(교통방송)

- 집중 홍보 : 발령일 17:00 ~ 시행일 09:00
- 홍보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필요성, 시민참여 홍보
- 홍보방법 : 전문가 인터뷰, 카드뉴스, SNS동영상,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후) 시행일(오전) 자막 알림 등

4-2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가. 추진 개요

- 추진기관 : 市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치구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 대 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79,590명('18. 12월말 기준)
- 추진방법 :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회원에게 마일리지 지급

나. 증빙자료 확인 및 마일리지 지급 확정(자치구, 동주민센터)

- 증빙자료 확인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 자료(차량번호판·계기판 사진) 확인
- 마일리지 지급 : 1회 참여시 3,000 마일리지 지급
 - 기부(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서울시 지방세납부 가능

부록 및 서식

<부 록>

1.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46
2.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내역	48
3.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49
4.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를 위한 문자전송	52
5.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 시행으로 강화되는 제도	53
6. 홍보 사례	54
7.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57
8. 비상저감조치 Q&A	59
9. 기관(부서)별 역할	64
10. 서울시 대기정책과 업무분장	67

<서 식>

1. 주차장·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시행결과 보고양식	68
2. 관리카드 작성양식(공공 사업장)	69
3. 관리카드 작성양식(공공 공사장)	70
4. 관리카드 작성양식(민간 사업장)	71
5. 관리카드 작성양식(민간 공사장)	73
6. 비상저감조치 관련 주차장 지도·점검 양식	74
7.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지도·점검 양식(사업장)	75
8.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지도·점검 양식(공사장)	76
9. 공사장 이행사항 안내문(예시)	77

부록 1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

연번	사업장명	관할 구청	종	배출시설	TMS	비고
1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구	1	소각시설	○	
2	탄천물재생센터		2	슬러지처리시설	○	
3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1	슬러지처리시설	○	
4	서울에너지공사 (마곡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3	보일러시설	○	
5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노원열병합발전소)	노원구	1	발전시설	○	
6	노원자원회수시설		1	소각시설	○	
7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도봉구	3	건조시설	×	
8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1	소각시설	○	
9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성동구	3	슬러지처리시설	○	
10	양천자원회수시설	양천구	1	소각시설	○	
11	서울에너지공사서부지사 (목동열병합발전소)		1	발전시설	○	
12	서울에너지공사서부지사 (신정3지구열병합발전소)		2	발전시설	○	휴지중
13	은평환경플랜트	은평구	1	소각시설	○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리 대기배출사업장 : 7개소

○ 민간부문 대기배출사업장

연번	사업장명	관할구	종	배출시설	TMS	비고
1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1	발전시설	×	
2	강남금융센터(주)		3	보일러시설	×	
3	(주)더블유디씨서울		3	보일러시설	○	
4	(주)나엔	강동구	2	건조시설	×	
5	삼성엔지니어링(주)		3	보일러시설	×	
6	서남바이오에너지(주)	강서구	2	발전시설	○	
7	서울대학교	관악구	2	보일러시설	○	
8	교통문화교육원		2	보일러시설	×	
9	스타시티 롯데백화점	광진구	3	보일러시설	×	
10	대성산업(주)	구로구	2	발전시설	○	
11	씨제이제일제당(주) 영등포공장		3	제분시설	×	
12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3	보일러시설	○	
13	연세의료원	서대문구	2	보일러시설	○	
14	이화여자대학교		2	보일러시설	×	
15	(주)현대백화점 신촌점		3	보일러시설	×	
16	(학)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서초구	2	발전시설	○	
17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성북구	3	보일러시설	×	
18	(주)호텔롯데롯데월드	송파구	1	발전시설	○	
19	롯데물산(주)		2	보일러시설	○	
20	서울아산병원		2	보일러시설	○	
21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양천구	3	보일러시설	×	
22	의료법인 성애병원	영등포구	3	보일러시설	×	
23	SIFC호텔디벨로프먼트(유)		3	발전시설	×	
24	(주)경방		3	발전시설	×	
25	(주)서부티엔디	용산구	3	보일러시설	×	
26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	보일러시설	×	
27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2	보일러시설	○	
28	(주)호텔롯데	중구	3	보일러시설	×	

부록 2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내역

연번	사업장 현황		비상저감조치 내역 (평상시 대비 감축율)			
	시행기관	사업장명				
1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가온 보일러	가동율	평상시 대비 40% 감축	슬러지 건조 (최대 40%)
2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소각시설 가온 보일러		평상시 대비 30% 감축	
3	서울시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평상시 대비 40% 감축	
4	서울 에너지공사	노원 에너지집단시설	발전시설 보일러	가동율	평상시 대비 20% 감축	발전 및 보일러 (최대 20%)
5	서울 에너지공사	목동 에너지집단시설	발전시설 보일러		평상시 대비 20% 감축	
6	서울 에너지공사	마곡 에너지집단시설	보일러		평상시 대비 20% 감축	
7	도봉구청	도봉음식물 중간처리장	건조시설	가동 시간	평상시 대비 가동시간 2시간 단축 (12시간→10시간)	건조, 보일러
8	은평구청	은평환경플랜트	소각시설	가동율	평상시 대비 소각부하 6% 감축	소각시설 (최대 40%)
9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평상시 대비 19% 감축 (83% → 64%)	
10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평상시 대비 40% 감축 (90% → 50%)	
11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평상시 대비 16% 감축 (75% → 59%)	
12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평상시 대비 18% 감축 (93% → 75%)	

부록 3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 대기배출 사업장

시설분류		참여방안	
1. 전기가스 증기업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발전 시설	열병합	① 운영시간 단축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열병합외	①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2. 소 각 시설업	소각·용융시설 (생활폐기물소각, 슬러지처리 등)	① 운영시간 단축 예) 9~18시 가동 → 9~16시 가동 ② 운영시간 조정 예) 9~18시 → 11~20시 또는 (9~14시, 20~24시)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예) 10톤/시간 → 8톤/시간, 100톤/일 → 80톤/일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3. 비금속광물 제조업	용융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성형·서냉·연마·광택시설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4.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제조시설 (클린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분류		참여방안
5. 금 속 제조업	전기로 시설	① 원료(폐스크랩) 선별 강화 예) 도색제거된 폐스크랩 선별·이용 ② 운영시간 단축 또는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소결·코크스 생산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고로 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6. 기계제품 제조업	도색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예) 고농도 미세먼지시 도색 공정 조업시간 단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소각로, 도색 공정 처리과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7.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시설 (연소시설)	① 운영시간 단축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⑤ 비산먼지 발생 저감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단축 ②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제조시설 * 선별·건조·포장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② 비산먼지 발생 저감
8. 섬유제품 제조업	전처리·표백·염색시 설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③ 비산먼지 발생 저감
9.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업	상압증류 및 분리공정	① 운영시간 단축·조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③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

○ 건설공사장

시설분류	제한내용
<p>건축물·토목·조경공사 등</p>	<p>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p> <p>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p> <p>살수량 증대</p> <p>덤프트럭 덮개 밀폐화</p> <p>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p> <p>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p> <p>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p> <p>운영 단축·조정(예) 출·퇴근시간 실내작업)</p> <p>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p> <p>* 도장, 연마, 뿌칠, 건축물해체, 채광 채취, 조사분쇄, 성토 절토 등</p> <hr/> <p>② 건설기계</p> <p>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p> <p>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공공 발주 공사장은 운영 금지)</p> <p>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p>

부록 4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를 위한 문자전송

- 전송대상 : 공무원, 사업장, 시민(대기질 알리미 신청자) 등
- 전송수단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 전송문(안)

발령 구분	발송 대상	발송 문구
예비저감조치	유관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긴급)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내일(○일) 도로청소 강화,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미시행 등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평일)	유관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긴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사장·사업장 조업 조정 등 상황전파 /서울시
	시 민	(긴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토·공휴일)	유관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긴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일) 도로청소 강화,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미시행 등 /서울시
	시 민	(긴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일)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서울시

◆ 문자서비스(대기질 알리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http://cleanair.seoul.go.kr>) 접속 → 메인 페이지 하단 →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클릭 →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신청
- ARS 신청
 - ARS(02-3789-8701)를 통해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

부록 5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 시행으로 강화되는 제도

구 분	기 준	변 경 ('19.2.15. 이후)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관련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 상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 (수도권외 차량, 25톤 미만 차량은 '19.5월말까지 유예)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설치지점: 51개지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설치지점: 51개지점 ※인천 11개소, 경기 59개소 운영중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 인천·경기는 조례제정 시행일부터
휴업·휴원의 권고 관련		
관련규정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대 상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8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조 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PM-2.5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 발령시
조치내용	(평상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휴업·휴원시) 돌봄교실 운영,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등교원 희망학생을 위한 담당교사 지정·운영,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마련 등 (평상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건설공사장 관련		
관련규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매뉴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 상	관급공사장 142개소	총 1,845개소(민간부문 건설공사장 1,703개소 확대)
조치내용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운영단축·조정 - 작업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 살수량 증대 -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등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출근시간대 회피) - 관급 63개소 : 공사시간 단축 - 민간 234개소 : 공사시간 조정 ※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에 한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기존과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관련(2019. 8월 이후)		
관련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24조
조치내용	-	신뢰도 높은 간이측정기 활용, 맞춤형 정책 추진 - 도시데이터 복합센서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수집 - 보육시설 IoT사업, 지하철 내 모니터링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우선 지원 - 오염지역 중 민감군 이용시설 집중 지역 - 통학차량 친환경차, 정화시설 지원 등 특별관리

가. 홍보 및 방송 문구

- SNS 홍보 문구(예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어 O/O(O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시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안내방송(예시)

(발령 당일 : 19:00, 20:00, 익일 : 07:00)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O월O일 오후 5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은 자제하시되,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전면금지** 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광판 등 방송표출 문구

O/O(O요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서울시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홍보용 메시지

<p>버스음성 (12초)</p>	<p>미세먼지는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120</p>
<p>비즈링 (25초)</p>	<p>미세먼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연 1만7천여 명! 미세먼지는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비상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주세요.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120</p>

○ 버스음성 안내방송

미세먼지는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120

○ 라디오 광고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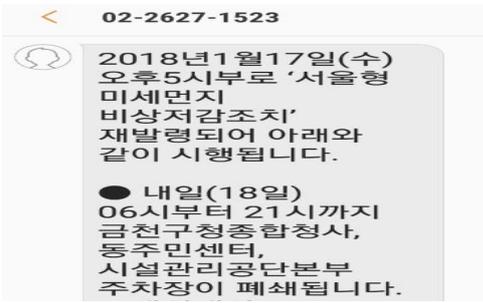
지금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당신이 바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영웅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니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alt. 200여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영웅 맞죠?ㅎ

하지만, 조기사망자가 17,000명에 이르는 또 하나의 재난
 -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많은 '시민해결사'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2부제 -더 많이 동참해주세요!
 Na> 이 캠페인은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 다양한 홍보 형태

 <p>2018년1월17일(수) 오후5시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p> <p>● 내일(18일) 06시부터 21시까지 금천구청종합청사,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본부 주차장이 폐쇄됩니다.</p>	 <p>news 1 2018년 01월 15일 (월) 일반</p> <p>'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차장 폐쇄한 금천구청</p> <p>(서울=뉴스1) - 15일 오전 발령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금천구청 관계자가 구청 내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금천구청 제공) 2018.1.15/뉴스1 photo@news1.kr</p>	
< 문자메시지 발송 >	< 언론보도 >	
 <p>2018. 1. 18(목) 06시 ~ 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p>	 <p>2018. 1. 17(수) 06시~21시 서울지역 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p>	 <p>2018. 1. 18(목) 06시~21시 서울지역 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p>
< SNS 활용 >	<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	< 전광판 활용 >

나. 캠페인 현수막

○ 캠페인 현수막(예시)



○ 캠페인 피켓, 보행자 안내 깃발, 자전거 깃발 문구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국민실천약속

친환경 교통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0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0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03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04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05 3급(급출발·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06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입, 코드뽑기 등)



07 공기정화기 등의 필터를
자주 청소합니다
(주방후드·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08 조리시에는 환기장치로
실내공기를 정화합니다
(주방후드 등)



생활주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09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폐비닐, 낙엽 등)



10 생활주변에 식물을 심습니다
(공터, 실내정화식물 등)



1.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가끔 서울에 올라오는데 차량 운행제한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cleanair.seoul.go.kr>) 또는 ARS (02-3789-8701)를 통해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상저감조치 등을 알 수 있음

2. 겨울철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는데 왜 시민이 불편해하는 비상저감조치를 하는지?

- 서울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유입의 비중이 55%정도이며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 등 동아시아 도시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미세먼지 감소에는 한계가 있음
 - ※ 동북아 대기질 포럼(10년~) : 7회 개최, 대기질 개선 공동 합의문(14)·선언문(16) 발표 등
- 서울시 자체 초미세먼지 원인이 난방·발전부문 39%, 자동차 배출가스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보일러 보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분진흡입 청소차량 보급,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매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차량 2부제 등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3.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콜센터(1833-7435)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누리집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음

※ 콜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미운영

◆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남

☞ 누리집 홈페이지 화면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등급조회 배출가스등급제란 자주찾는질문(FAQ)

내 차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일까요?

차량번호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세요.(12가1234) 조회하기

-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 확인하는 방법도 있음

① 차량 본넷트를 열고 → ②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 →
③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의 합계를 등급 산정규정*과 비교 → ④ 등급 판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

4. 운행제한 대상 및 유예대상 차량 어떠한지?

- 운행제한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19.2.15일부터 운행제한이 시행됨
 - 5.31일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총중량 2.5톤이상 수도권 등록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며, 6.1일부터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됨
 -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 특수공용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운행제한 유예대상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5.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6.1일 이후 단속실시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 등록차량은 저공해사업 예산 등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 유예
 - 총중량 2.5톤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저공해 조치 적극 유도

※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대상

시행일	2.15~5.31	6.1~
단속대상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 수도권차량 - 수도권 40만대(서울 10만대)	5등급 전국차량 (245만대)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차량 등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미만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외 차량	

5.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시 단속방법은?

- 운행제한 단속은 평일만 실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제한이 실시되지 않음
 - 단속방법은 번호판 자동인식카메라가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의해 단속하며, 장치 미부착 또는 장치미개발 등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됨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을 연차별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이동단속차량, 친환경기동반 등 인력 동원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
- ※ 서울시 단속시스템(누계, 개 지점) : 51('18년) → 66('19년) → 100('20년)

6.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별표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10만원)
 - 유예차량(총중량 2.5톤미만 차량,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외 등록 차량)의 경우 '19.5.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신 "6.1일 이후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
 - 비상조감조치 시행일 2번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는 처음으로 적발된 시·도지사가 부과

7. 공해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PM 저감효과는?

- 서울 지역 경유차 PM_{2.5} 배출량 3,250kg/일이며, 24~48% 감축 추정됨
 - 100% 운행제한 이행 시 1,553kg/일 저감(48%)
 - 80% 운행제한 이행 시 1,242kg/일 저감(38%)
 - 50% 운행제한 이행 시 776kg/일 저감(24%)
- 산정 근거
 - 차량 등록 현황('17년말): 수도권 경유차량(4,082천대) 중 5등급 차량(1,020천대)
 - 차종 및 연식별 PM-2.5 배출계수: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7년)
 - 차종 및 연식별 일평균 주행거리: 교통안전공단('17년) 자료
 - 경기(12%), 인천(8%) 차량 서울시 유입비율: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15년) 자료

8.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가 불가하여 차량 2부제를 시행 할 경우 민간 차량도 해당 되는지?

- 해당 됨
 -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폐쇄하여야 하나 복합청사, 임대청사, 민간운영 청사, 시민 편의시설의 경우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2부제로 운영하며 민간차량도 2부제로 인한 출입제한이 될 수 있음

부록 8

기관(부서)별 역할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기 후 환 경 본 부	총괄, 시·구 합동 특별점검반 운영,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공사장 조업단축, 공무원 안내문자 발송, 도로청소 강화, 시민단체 홍보 캠페인, 배출가스·공회전 차량단속, 마일리지회원 참여 인센티브 지급,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대책 이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단속, 비상발전기 운전자제 안내 등
도 시 교 통 실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필요시 대중교통 증차 검토 도심통행량 등 자료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서 울 교 통 공 사	안내방송,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방풍문 설치, 승강장내 공기청정기 설치, 역사·터널 등 물청소 확대, 전동차내 먼지제거필터·공기질개선장치 확대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市 발주 공사장에 대해 당일 외부작업 금지 지도, 공사장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등 분석자료 제공,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대책 이행
행 정 국	긴급 부구청장 (영상)회의개최, 市·자치구(주민센터) 주차장 통제(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자치구 SNS, 문자전송 등 홍보안내 및 수합
주 택 건 축 실	자치구 아파트 주민 안내방송 실시, 공사발주 공사장에 대해 당일 외부작업 금지·지도, 공사장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등 분석 자료제공
물 순 환 안 전 국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가동률 조정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서울시 홈페이지 전파 등
복 지 정 책 실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어린이, 노약자, 미세먼지 취약계층 알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마스크 지급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인, 어린이집 휴원 권고
감 사 위 원 회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시·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여부 등)
시 민 건 강 국	의료취약계층 호흡기질환 등 건강관리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비상시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평 생 교 육 국	市교육청에 유치원·학교 휴업 권고
교 통 방 송	대중교통 이용 참여 등 방송자막 표출, 특별 프로그램 편성 등 대시민 홍보
경 제 정 책 실	상공회의소·기업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참여 독려
시 민 소 통 기 획 관	발령 시 SNS 전파 등 대시민 홍보
대 변 인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비상저감조치 SMS 발송
서 울 연 구 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기 획 조 정 실	비상저감조치 市 이행상황반 회의 운영
자 차 구	자치구 주차장 통제(게이트 앞 출입제한 안내,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자치구 아파트 주민, 기업체 등 홍보 캠페인 (시민단체 협력)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단속 자동차 매연, 공회전, 불법주정차, 불법소각 단속 등

○ 부서별 역할

기관	부서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전기관	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폐쇄 ○ 건물 난방온도 낮추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소속·산하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비상저감 조치 시행방안 홍보(평상시 포함) 	-
대변인	언론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SMS 발송 	6610 66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총괄 ○ TV, 시민 게시판, 미디어 보드 등 홍보 	6424 6426
	뉴미디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648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및 2부제 이행실태 점검 	302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운영 	661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숙인 시설에 상황전파 및 보호조치 시행 	5328
	보육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휴원 권고 	511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등을 통한 상황전파 	296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회의소, 기업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참여 독려 	5258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시설에 상황전파 등 장애인 보호조치 시행 	7447 7476
	어르신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 어르신 보호조치 시행 	740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교통량, 대중교통 이용객수 등 분석 	2218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홍보 및 필요시 대중교통 증차 검토 	4334 2263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대책 시행 	4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추진(주차단속원) 	4566
교통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통행량 등 분석자료 제공 	496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514
행정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주차장 폐쇄 	5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소문 별관 주차장 폐쇄 	16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직원대상 상황전파 	5657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안내 ○ 부구청장 점검회의 운영 	5805

기관	부서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유치원, 학교 휴업 등 권고	391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678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2688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의료취약계층 호흡기질환 등 건강관리	768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재난문자(CBS) 발송	8535 0090~2
	도로관리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도로보수 작업자)	815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아파트 주민 대상 전파 및 결과수합	713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공원관리 작업자)	203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가동률 하향조정 시행 및 점검	3836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 시의회 본관 주차장 폐쇄	2180-777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도기본 발주 공사 작업시간 조정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공사장 작업자)	3708-2319 2317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대시민 홍보 등 이행	6311-9515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마곡) 주차장 폐쇄	2640-5166
	환경안전부	○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마곡) 가동률 하향조정	2640-5220 5222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미세먼지 발생원인, 비상저감조치 효과 등 분석 ○ 대기오염전광판 내 비상저감 관련 집중홍보	570-3371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미세먼지 발생원인, 비상저감조치 효과 등 분석	2149-1096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과	○ 각급 학교 상황전파, 실외활동 자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보호조치 이행	3999-592
자치구	유관 부서	○ 직원 및 소속기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관리 ○ 산하 기관 및 사업장·공사장 단축·조정 및 이행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참여 홍보(홈페이지, SNS 등) ○ 주차장 폐쇄 확인 및 안내문 비치 등 사전준비 ○ 아파트 주민, 기업체 등 홍보 캠페인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운행제한 이행 ○ 자동차 매연, 공회전, 불법주정차, 불법소각 단속 등	-

○ 대기정책과 사전대응 연락(발령일 16시) 및 이행확인

기관명	기관별 준비사항	연락처	전담자	팀별
대변인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SMS 발송	6210	김효동	대기정책팀
총무과	서울시 직원대상 비상저감 발령 문자 전송	5659	문성재	대기정보팀
체육정책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실외체육시설 운영 중지	2690	유성원	
관광정책과	야외행사 취소 등	2810	유성원	
교육정책과 보육담당관	학교, 어린이집 휴원, 수업시간 단축 등 전파	3916 5116	박성은	
생활환경과	도로청소 확대, 분진흡입차량 투입 등	3708	박성은	
시민소통기획관	SNS, 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 보드 표출	6424	박성은	
교통방송	방송 자막 표출 등 홍보 및 실적 제출	311-5221	박성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해당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3708-2352	김종호	배출관리팀
서울주택도시공사	해당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3410-7756	김종호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하향	3682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가동률 하향	3836	김성범	
녹색에너지과	열병합발전소 가동률 하향	3556	김성범	
감사위원회	시청사(본·별관) 산하기관 사업소 주차장 폐쇄 등 점검	3028	양송재	대기환경전략팀
환경정책과	홍보캠페인, 자치구 이행 점검 등 제출	3529	양송재	
시청본관주차장	주차장 폐쇄, 안내문 비치 등 사전준비	5632	김보람	
시청별관주차장	주차장 폐쇄, 안내문 비치 등 사전준비	1609	김보람	
도시교통실	교통량 및 대중교통 이용량 등 조사	2218	김보람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지하철역사 공기질 관리, 홍보 등	4162	김보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570-3371	배성진	
서울연구원	효과분석 등	2149-1096	배성진	

○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 업무분장

구 분	담당자	역 할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저감조치 상황실 근무상황 유지 ○ 대외협력체계(환경부,경기,인천) 유지, 이행사항 파악
비상저감조치 발령/해제	이준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발령시기 등 협의 ○ 비상저감조치관련 대기질 동향 파악 ○ 예비/휴일/비상저감조치 발령(해제) 요건 검토 ○ 보도자료안, 발령문안 등 작성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관리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박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저감조치 발령(해제) 해제 농도추이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현행화 등 관리 ○ 예비저감조치, 휴일발령 등 사전전파 준비 ○ 자치구, 관계기관 저감조치 결과 수합(10일 이내) ○ 교통방송,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핫라인 운영 ○ 교육정책과, 보육담당관 학교휴업 관련 연락
경보시스템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유지	문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발령시스템 등 긴급 장애처리 및 최적 상태 유지 ○ 경보발령시스템 유지관리업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 기관내부 비상연락 등 상황전파(총무과 협조)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해제) 시스템 처리	유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주의보, 경보 발령 ○ 대기질 문자(영어문자 포함) 발송 ○ 수도권 특별점검반 관련 업무 ○ 자치구, 관계기관 저감조치 결과 수합(10일 이내) ○ 교통방송,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핫라인 운영

서식 1

주차장·사업장·공사장 현황 및 시행결과보고 작성양식

비상저감조치 주차장 현황 및 시행결과보고 작성양식

연번	관리기관	구분	건물명	담당자(정)				담당자(부)			시행결과			비고
				대표번호	이름	휴대폰	이메일	이름	휴대폰	이메일	시행일	구분	이행여부	
		폐쇄/2부제									0.00	예비/비상	O/x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현황 및 시행결과보고 작성양식

연번	관리기관	구분	사업장명	담당자(정)				담당자(부)			주요 조치사항	시행결과			비고
				대표번호	이름	휴대폰	이메일	이름	휴대폰	이메일		시행일	구분	이행여부	
		공공/민간									- 운영시간 단축 : 00~00시, 0시간 → 00시~00시, 0시간 - 가동률조정 : 00% → 00% - 기타 :	0.00	예비/비상	O/x	주요조치사항과 실제 조치사항 다를 시 작성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현황 및 시행결과보고 작성양식

연번	관리기관	구분	의무/자발	사업장명	담당자(정)				담당자(부)			주요 조치사항	시행결과			비고
					대표번호	이름	휴대폰	이메일	이름	휴대폰	이메일		시행일	구분	이행여부	
		공공/민간	의무/자발								- 운영시간 단축 : 00~00시, 0시간 → 00시~00시, 0시간 - 공사장 인근도로 물청소 : 0회/일 → 0회/일 - 실내작업 우선추진 - 기타 :	0.00	예비/비상	O/x	주요조치사항과 실제 조치사항 다를 시 작성	

※ 엑셀양식 별도송부

서식 2

관리카드 작성양식(공공 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구청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 ¹⁾	OO구청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 ²⁾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OOO(정), OOO(부)
		현장	OOO(정), OOO(부) OOO(정), OOO(부)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OO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OO시 OO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OO(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OO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kg/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kg/일)

(발생량 및 배출량은 [연간 발생·배출량(kg)/가동일수])

오염물질	합계	먼지(TSP)	SOx	NOx	HCl	기타
발생량						
배출량*						

* 배출량 파악가능시 기입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3

관리카드 작성양식(공공 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 ¹⁾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 ²⁾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OO공사 OO팀 소속, OO본부 OO팀 소속, OO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OO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OO건설 소속 직원 등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 ~'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m²,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 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실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OO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OOkg/일 감소
실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OO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OO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장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OO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OO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4

관리카드 작성양식(민간 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구청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 ¹⁾	OO구청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 ²⁾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OO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OO시 OO과
-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OO(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OO 구청 소속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kg/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저감방법* : OO 시설 가동중단 등

* 예) OO시설 OO기 중 OO기 가동중단, OO시설 가동시간 단축(OO시간 → OO시간), 가동율 조정(100→80%), 방지시설 최적운영, 저황연료 사용 및 기타 직원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물청소 등

○ **오염물질 배출량 및 저감량(kg/일)**

* 사업장 전체 일평균 배출량 명시(일부 시설 적용 시 해당시설의 배출량, 저감량 및 저감율 함께 명시)

- 사업장 전체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저감조치 배출시설 배출량 및 저감율

(배출량(kg)/일)

구 분	먼지(TSP)	SOx	NOx	VOC	NH3	기타
평시 배출량						
비상시 배출량						
저감량(저감율)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세부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5

관리카드 작성양식(민간 공사장)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 ¹⁾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 ²⁾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OO공사 OO팀 소속, OO본부 OO팀 소속, OO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OO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OO건설 소속 직원 등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 ~'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m²,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 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심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OO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OOkg/일 감소
심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OO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OO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장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OO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OO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비상저감조치 관련 주차장 지도·점검표

I. 기관 현황			
기관명		연락처(주차장담당자)	
주 소			
II.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해당일 주차장 출입제한 여부			폐쇄 2부제
○ 차량게이트 앞 입간판 배치 여부			
○ 인근 이용 가능한 유료주차장 확보 여부			
○ 인근 이용 가능한 유료주차장 안내문 부착 여부			
○ 차량출입 통제 직원의 적용제외 차량 숙지 여부 ※ 제외차량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 제외			
○ 현장사진			
III. 특이 사항 :			
IV. 점검자 의견 :			
V.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7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지도·점검 양식(사업장)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표

I.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연락처(사업장담당자)		
주 소				
II.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예비	비상
○ 가동률 하향 조정(운영단축) 이행 여부				
○ 해당사업장 직원들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간 등 숙지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안내판 부착, 전광판 표출 등 홍보 여부				
○ 가동률 하향 조정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평상시	발령시	평상시	발령시	
%	%	%	%	
○ 운영단축 시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평상시	발령시	평상시	발령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예상 저감효과(관리카드 참고)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평상시 배출량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후 배출량	평상시 배출량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후 배출량	
kg/시간	kg/시간	kg/시간	kg/시간	
III. 특이 사항 :				
IV. 점검자 의견 :				
V.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8

예비·비상저감조치 관련 지도·점검 양식(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지도·점검표

I. 공사장 현황				
발주기관		시행사		
공사명		연락처(현장관리자)		
주소				
II. 점검사항 및 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	○조업단축 이행 여부(철거, 굴토 공사장) - 관급공사장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4시간 단축) - 민간공사장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06~09시) 회피)			
	○공사 진행 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지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여부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지 여부 ○주변 도로등 청소실시 여부			
III. 특이 사항 :				
IV. 점검자 의견 :				
V.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①	
소속	직급	성명	①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안내

2019.2.15일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란?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2.15.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은?

- ✓ 초미세먼지 발생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킬 때 발령됩니다
-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② 당일 0~16시 주의보($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mu\text{g}/\text{m}^3$ 초과 예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공사시간을 단축(공공) 또는 조정(민간)해야 합니다

시행일 : 2019. 2. 15일부터

공동 조치사항

- **공사 시간 단축(공공 공사장) 또는 조정(민간 공사장) - 의무사항**

(예시) 평상시 07시 ~ 16시(점심시간 제외, 8시간) 조업하는 공사장의 경우

- 단축 : 시행일 11~16시 조업(4시간 조업) → 단축 4시간은 저농도시 추가작업
- 조정 : 시행일 09~18시 조업(8시간 조업) → 출근시간대 회피하여 작업

※ 공사시간 단축·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에 한정(건축물 축조·해체, 토목,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

-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예 : 일 1 → 3회)
- **실내작업 우선 실시**
- **노후 건설기계 운영 금지**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공정별 조치사항

공정	억제시설 설치	조치할 사항
야적	방음방진벽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신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살수량 증대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 일 1→3회)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 **공사장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작성 후 관할 구청(환경 관련 부서)에 제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과(☎1234-5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관 부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연락처	대기정책과	Tel. (02) 2133-3639, 3669 Fax. (02) 2133-1025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유관기관 연락처

-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044) 201-6872, 6875
-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044) 203-6893
- 서울시(교육정책과) : (02) 2133-3919
- 서울시(보육담당관) : (02) 2133-5116
-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 (02) 3999-463
-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 : (02) 3999-003
- 서울시교육청(초등교육과) : (02) 3999-414, 402
- 서울시교육청(중등교육과) : (02) 3999-431